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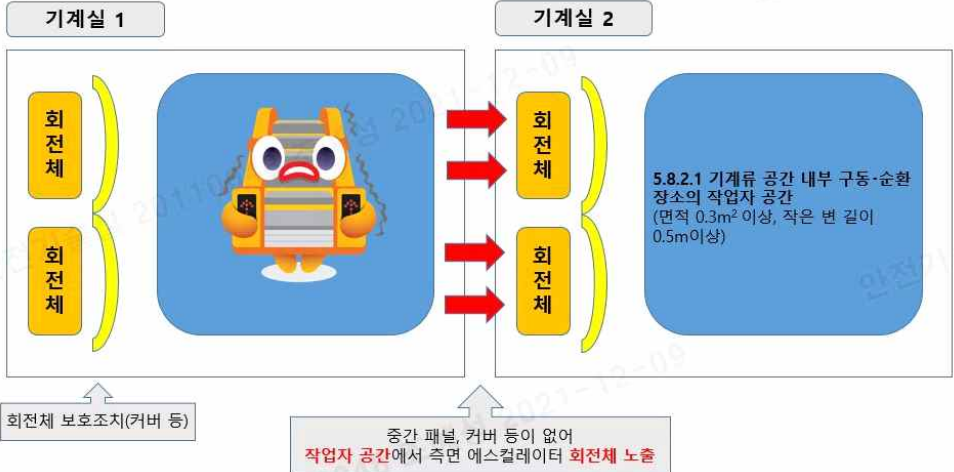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13
구 분	기계실 내부 통로 0.5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
목적 /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.6.3.2.4의 “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”에 대한 정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석1: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 / 발판 ② 해석2: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 / 보호난간이 있는 발판
관련법령 / 고시	<p>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.6.3.2.4 기계실 바닥에 0.5 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는 경우, 6.2.5에 따른 고정된 사다리 또는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이 있어야 한다.</p>
적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기준의 목적은 0.5 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한 안전조치와 계단이나 발판으로 이동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규정임 - 따라서, 6.6.3.2.4의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은 “보호난간이 있는 계단” 및 “보호난간이 있는 발판”으로 해석함(현재 적용내용과 동일)
비 고	
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14
구 분	엘리베이터 피트 정지스위치 관련
목적 /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.1.5.1 피트 정지스위치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기준에서는 피트 깊이 1.6 m 이하, 1.6 m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정지스위치의 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있음 - 피트 깊이 1.6 m 이하(정지스위치 1개로 가능)의 승강기에 대해 1.6m 초과(정지스위치 2개 이상 필요)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
관련법령 / 고시	<p>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.1.5.1 피트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한다.</p> <p>가) 16.1.11에 적합하고, 피트 출입문 및 피트 바닥에서 잘 보이고 접근 가능한 정지장치.</p> <p>이 정지장치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</p> <p>1) 피트 깊이가 1.6 m 이하인 경우, 정지스witch는 다음 위치에 있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 위로 0.4 m 이상 및 피트 바닥에서 수직 위로 2 m 이내 - 승강장문 안쪽 문틀에서 수평으로 0.75 m 이내 <p>2) 피트 깊이가 1.6 m 초과인 경우, 2개의 정지스위치의 다음 구분에 따른 위치에 각각 있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부 정지스위치: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 위로 1 m 이상 및 승강장문 안쪽 문틀에서 수평으로 0.75 m 이내 - 하부 정지스위치: 피트 바닥에서 수직 위로 1.2 m 이내 및 피난 공간에서 조작성이 가능한 위치
적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트 깊이가 1.6 m 이하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지스switch가 2개 이상 설치되어 6.1.5.1 가)2)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적합 - 안전기준 6.1.5.1 가)2)는 피트 깊이가 1.6 m 초과하는 경우, 정지스switch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여 6.1.5.1 가)1)의 1.6 m 이하의 기준보다 안전상 강화되므로 적용에 문제가 없음
비 고	
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15
구분	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 트러스 내부 회전체 등 보호조치 관련
목적 / 배경	<p>○ 여러 대의 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가 중간 패널 없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, 안전기준 5.8.2.1에 따른 기계류 공간 내부 구동·순환 장소의 작업자 공간 보호 조치가 미비한 경우 발생</p>  <p>- 그림의 기계실 1에서 기계실 2의 움직이는 부품 또는 회전체 노출</p>
관련법령 / 고시	<p>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4]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.8 기계류 공간 및 구동·순환 장소 5.8.1 일반사항 이 공간(기계실)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운전,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설비만 수용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. 화재경보시스템, 직접 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 헤더는 우발적 손상에 대해 충분히 보호된 경우 및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공간에 설치될 수 있다. 움직이고 회전하는 부품 특히, 다음과 같은 부품에는 KS B ISO 12100, 6.3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 및 방호되어야 한다. 가) 축의 키 및 스크류 나) 체인, 벨트 다) 기어, 기어 휠, 스프로킷 라) 돌출된 전동기 축 마) 둘러싸지 않은 과속조절기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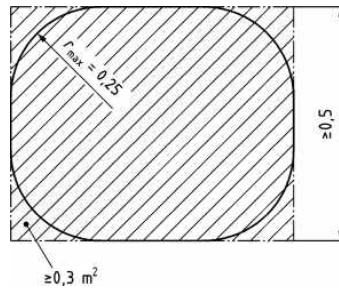
바)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출입해야하는 구동·순환 장소에 있는 스텝 및 팔레트의 역전

사) 수동핸들 및 브레이크 드럼

5.8.2 치수 및 설비

5.8.2.1 기계류 공간 내부(특히, 트러스)의 구동·순환 장소에서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부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.

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의 크기는 0.3m² 이상이고 작은 변의 길이는 0.5m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영구적으로 설치된 부품이 최대 반경 0.25m의 둥근 모서리 뒤에 위치하고 서 있을 수 있는 면적 위로 0.12m 이상 높이 위치하는 경우, 이 공간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부품을 둘 수 있다.(그림 4 참조)



[그림 4 - 서 있을 수 있는 공간]

적 용

- 여러 대가 중간 패널 없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의 기계류 공간 내부 구동·순환 장소의 작업자 공간에서 다른 에스컬레이터의 회전체, 움직이는 부품 등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5.8.1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야 함

비 고